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6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한화라이프랩㈜ 보험대리점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과태료 5,73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(허위·가공의 보험계약 모집)

◦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- 한화라이프랩㈜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 등 3명은 2024.1.31.~2024.3.27.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박○○ 등 9명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㈜의 ‘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.0’

등 12건의 보험계약(초회보험료 5.6백만원, 수수료 31.9백만원)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

2.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)

◦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- 한화라이프랩㈜ 보험대리점은 2024.3.6.~2025.1.31. 기간 중 한화손해보험㈜ '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.0-무배당' 등 965건의 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20.1백만원)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송△△에게 수수료 152.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보험업법」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제1항 제6호
○ 「보험업법」 제209조(과태료) 제7항 제7호
○ 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제1항 제2호
○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69조(과태료) 제5호